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0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:김용판·윤재옥·박덕흠

구자근 • 박수영 • 유경준

박대수 · 김성원 · 윤창현

이 용・송석준・정운천

이종성 • 추경호 의위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인 회전교차로는 2010년경 도입되었으며, 교통소통 및 안 전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, 회전교차로에 관한 정의 및 통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,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, 차마를 운전하는 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25조제4항 신설 등).

#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의2. "회전교차로"란 제13호의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 (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)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.

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좌회전을 하기"를 "좌회전 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"로 한다.

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우선 양보선에 정지하여야 하며,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면서 서행하여 진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3의2. "회전교차로"란 제13호</u>
	의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
	교통섬(차마의 안전하고 원활
	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
	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
	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
	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
	설을 말한다)을 중심으로 반
	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
	원형의 도로를 말한다.
14. ~ 33. (생 략)	14. ~ 33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교차로 통행방법) ① ~	제25조(교차로 통행방법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
	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우선 양
	보선에 정지하여야 하며, 손이
	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
	신호를 하면서 서행하여 진입
	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회
	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u>⑤</u>·<u>⑥</u> (생 략)